

의안번호	2210583
의 퇴 인	이학영의원
회 답 일	2025.6.20.
추 계 번호	25D2960

상품권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금융위원회가 상품권발행자의 영업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2억 5,800만원씩 총 12억 9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상품권발행자의 영업 실태 조사(안 제20조)	258	258	258	258	258	1,290

주: 본 추계는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유사 실태조사 사업의 평균 소요비용을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이며, 실태조사의 주체와 방식 등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9조(상품권정책협의회 등의 설치)	상품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·추진하고,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두고(제1항), 상품권정책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품권정책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(제2항), 상품권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·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상품권관계기관협의회를 둠(제3항)	의무규정
2	제20조(상품권발행자의 실태조사 등)	시·도지사는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상품권발행자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(제1항), 금융위원회는 시·도지사,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상품권발행자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19조(상품권정책 협의회 등의 설치)	×	「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」, 「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등을 비추어 볼 때, 상품권정책협의회 등이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므로, 상품권정책협의회 등의 설치·운영 비용은 현행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2	제20조(상품권발행자의 실태조사 등)	0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에 따른 상품권발행자의 영업실태 조사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유사 실태조사 사업의 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함
- 본 추계에서 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는 상품권발행자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한 것이므로, 금융위원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안 제20조제1항¹⁾은 시·도지사로 하여금 수시로 상품권발행자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
 - － 시·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을 동원하여 불법영업행위 예방 및 단속과 같은 형태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임
 - 그러나 안 제20조제2항에 비추어, 실태조사의 목적은 “상품권발행자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”로 이해되므로, 유사사례인 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”의 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인 점²⁾을 고려하여, 본 추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전국 지방

1) 「상품권법안」

제20조(상품권발행자의 실태조사 등) ① 시·도지사는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상품권발행자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금융위원회는 시·도지사,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상품권발행자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,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2)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제15조의2(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

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
- 제정안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국회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상품권발행자의 실태조사 등의 추가재정소요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
 -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영업실태에 관하여 수행하는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과 같음. 평균 예산소요액은 258백만원임

[표 2] 영업 및 산업 실태조사 사례: 2024년 기준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지역사랑상품권	앱 마켓 운영	불법사금융	평균
주관	행정안전부	방송통신위원회	금융감독원	-
예산소요액	223	320	230	258

주: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의 예산소요액은 2023년 집행액을 의미하며, 앱 마켓 운영과 불법사금융 실태조사는 2024년 기준 예산액을 의미함

자료: 사업설명자료(Ⅱ-1)와 해당기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추계결과, 금융위원회가 상품권발행자의 영업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2억 5,800만원씩 총 12억 9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상품권발행자의 영업 실태 조사(안 제20조)	258	258	258	258	258	1,290

주: 본 추계는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유사 실태조사 사업의 평균 소요비용을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이며, 실태조사의 주체와 방식 등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영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실태조사의 주체·대상 및 방식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31	jsy@na.go.kr